

研究報告書
第62輯(2011.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오 기 수 (김포대학 교수)

◆ 共同研究者 ◆

손 장 엽 (세무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3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일반적 고찰	8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면세제도	8
제2절 부가가치세의 면세효과	12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13
1. 우리나라의 면세대상	13
2. OECD 국가의 면세대상	16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변천	19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빈도	19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제정 당시와 현재의 비교	22
3.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의 연도별 개정 이유	24
제3장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필요성과 해석	27
제1절 차용개념의 필요성	27
제2절 차용개념의 문제점	28
제3절 차용개념의 위임입법	35
1. 위임입법의 필요성	35
2. 차용개념의 변화에 대한 위임입법	36
3. 위임입법에 의한 차용개념 제한의 문제점	38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	41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의 차용개념	41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차용개념	45
1. 금융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45
2.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의미	48
3. 다른 법령에서 ‘금융’의 의미	53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서 ‘금융용역’의 변화	57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차용개념	60
1.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60
2.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의미	61
3. 다른 법령에서 ‘의료보건’의 의미	64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변화	68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차용개념	70
1.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70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의미	71
3. 다른 법령에서 ‘교육’의 의미	72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서 ‘교육용역’의 변화	75
제5절 다른나라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법 규정과 면세범위	77
1. 금융용역	77
2. 의료보건용역	80
3. 교육용역	83
제5장 주요 차용개념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분쟁 사례 분석	86
제1절 조세 분쟁의 의의	86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심·판례분석	88
1. 금융용역	88

2. 의료보건용역	93
3. 교육용역	99
 제6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의 입법제안	101
제1절 의 의	101
제2절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입법제안	102
1. ‘금융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102
2. ‘의료보건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105
3. ‘교육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108
 제7장 결 론	113
 ☞ 참고문헌 ☞	11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법이란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법 문언에 사용되는 용어 역시 사회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 경우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용어들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적인 사회언어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될 때에는 입법기술상 특정 법령에서 당해 용어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세법령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법적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조세법의 특수한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령 내에 별도의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의 성격상 조세법령에는 납세자의 사생활 또는 경제생활과 관련한 법적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용역을 비롯한 금융·의료·교육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들 용어 중에는 사회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의 의미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개념들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져도 무방한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개념이 조세법상 특수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법령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세법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조세회피를 유발시키고, 조세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은 필요하다.

경제적 생활사실, 경제활동은 1차적으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세법이 이러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는 그대로의 행위나 사실로서가 아니고 사법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채택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법이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법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속명적으로 사법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고 세법의 입법에 있어서나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나 사법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된다. 그러나 세법은 사법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종의 법이다. 조세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조세실체법에서는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 같이 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갖추어지면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법과는 다른 원리에 기하여 규율되고 또한 조세채권의 행사 실현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조세절차법에서는 주로 부과징수에 관한 권력적 관계로 되고 있는바, 세법은 사법과 원리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공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홍광식, 1994, 543~629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을 규정할 때 차용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과는 달리 부분면세제도이다. 즉 면세는 면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이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부분면세제도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면세 관련 용어나

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첫째, 납세자가 면세규정에 존재하는 차용개념의 불확실성을 조세회피행위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분쟁의 요인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징세비용을 줄이고 셋째,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중 최근에 면세의 폐지 또는 축소가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시행령에 면세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금융용역’과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을 주요 차용개념으로 하여 먼저 살펴보고, 심판례와 판례를 통하여 면세관련 차용개념으로 인한 분쟁의 요소와 그 원인을 파악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차용개념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 차용개념의 정의를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차용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조세법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조세실체법의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없었다.

강인애는 「조세법 Ⅱ」에서 “조세법은 민법, 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예, 이자, 배당, 상속, 증여 등)가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을 조세법에서 사법개념의 차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실정세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사법상의 개념을 차용개념이라고 한다”라고 차용개념을 정의하면서 이 차용개념이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강인애, 1989, 87~89면).

김민호는 “사법(私法) 등에서 사용되는 법 개념과 조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된다면 법체계의 통일성,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용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립되어야 하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해석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의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도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김민호, 2002, 579~594면).

이동식은 “차용개념이 세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법과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엄격한 사법 의존적 차용개념 해석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을 세법에서 반드시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해석해야만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이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하여 세법의 차용개념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동식, 2002, 461~477면).

홍광식은 “확실히 차용개념을 그 본래의 의의와 다른 의의로 해석하는 것이 징수확보의 요청이나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의 요청에 보다 적합한 경우가 적지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필요한 입법적 준비를 함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조세입법과정에 있어서 법형성의 본연의 자세로서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청과 징수확보 또는 공평부담의 요청이 대립하는 국면이 생긴 경우에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과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과 어느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에 귀착된다. 문제는 입법이 현실의 모든 문제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조세법이 다른 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별의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그것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고 또한 규정의 취지·목적에 합치된다고 생각된다. 차용개념은 원칙으로 사법에 있어서와 동의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광식, 1994, 579~580면).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선행연구는 면세제도의 개선과 면세범위의 축소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차용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유찬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은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상의 문제점과 경제활동의 왜곡을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적 필요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을 허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범위설정은 그 정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과세주체의 특성에 따른 면세와 중간재 면세로 인해 과세불평등을 초래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번잡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면세를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세범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 이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의 상당 부분이 과세로 전환되었다.

박민(2002)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의 과세전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성형외과 의사의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전환이라면, 성형외과 의사의 과세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인 국민의 과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미

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재건목적의 성형수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성형수술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셋째, 치과의 치아교정이나 심미치과적 치료 등도 미용목적의 의료행위이므로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이다. 넷째, 미용성형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였고, 미용성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 고자 한다면 정부가 이를 구별하여 과세로 막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려면 그 구별기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의 과세 전환을 반대하였다(박민, 2002, 63~68면).

안창남(2002)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의 과세전환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가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로 ‘미용성형이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3세부터 43세까지의 여성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78%가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사회현상(한겨레신문, 2002.8.11)을 고려할 때 미용성형과 국민 기초용역의 무관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과세로 전환하고자한다면, 과세전환 보다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의 보완 등 세원관리정책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셋째, 미용성형이 과세로 전환되면 이는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담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수세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안창남, 2002, 8~11면).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용역 면세범위와 EU의 의료용역 면세범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지적하였다. “첫째, EU의 경우 의료용역의 면세 대상이 인간으로 한정 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까지

면세하고 있다. 둘째, EU에서는 인간의 질병 진단·치료·건강 유지 및 예방 목적을 위한 의료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용역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대상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의사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또한 치료·예방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치료목적이 아닌 진단서 발급 등을 과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김승래 외, 2007, 71~72면).

오기수(2006)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의 논문에서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복리후생 지원과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비용품과 출산 및 육아용품은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과 문헌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차용개념을 분석함으로써 면세규정의 합목적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위임으로 필요시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 면세규정의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면세제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도입은 조세제도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간접세가 전체 내국세 세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간접세 구조는 197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지닌 영업세와 물품세·석유류세·직물류세 등 개별소비세의 세수구성이 34% 대 66%로 개별소비 중심의 체제였다. 특히 간접세의 세목은 11개로서 각 세목의 세율도 상이하고, 신고일자 및 신고절차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통행세·입장세·전기가스세·유흥음식세·석유류세를 대부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고, 일부품목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로 하였으며, 주세·전화세·인지세는 존속시켜 세정 및 세제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75년에는 세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1976년 1월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도입의사를 발표하였다. 그 후 6월 16일 세제심의위원회가 재무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였다. 9월에는 부가가치세 실시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마침내 1976년 9월 14일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많은 논란을 겪은 후 11월 17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2일에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해인 1977년 7월 1일을 기해 실시하게 되었다.

1976년 11월 29일 그 당시 국회의 재무위원회 ‘부가가치세법안 심사보고서’의 제안사유에는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 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지니고 있는 장점 즉,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완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골자 중 “면세는 다음과 같이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① 수출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②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하도록 함
 -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 식료품(농·축·수·임산물을 포함 함)·수돗물·연탄·일반버스·지하철 등
 -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교육·보험
 - ㉢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방송(광고는 제외 함)·예술작품·문화행사·아마추어 스포츠·도서관·박물관 등
 - ㉣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 : 자유직업자의 인적용역
 - ㉤ 기타 : 정부기업·우표·인지·증지·복권·국가에 대한 무상증여재화·금융·부동산임대 등
 - ㉥ 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완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경제·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의 부과 징수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사업자들

중심으로 할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정당화되는 이유 즉, 부가가치세에 면세제도가 도입되는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들 수 있다(김유찬, 1995, 30~32면).

- ①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 ②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
- ③ 사회적 관점에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
- ④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부적합한 것(노동·자본·토지 등 생산요소)
- ⑤ 부가치세의 산정이 어려운 것
- ⑥ 다른 곳에서 과세(특히 개별소비세)
- ⑦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여기에 조세정책의 하나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면세제도 도입근거로서 ‘⑧ 복리후생의 지원’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표 1]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대상을 면세하는 근거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은 강한 근거를, △는 약한 근거를 나타낸다.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면세를 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과 ‘금융보험용역’으로 나타났다.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의 면세하는 근거는 ‘사회적 관점에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금융용역은 ‘부가치세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항목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						○	
2.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					○
3. 교육용역			○					
4. 금융·보험용역					○		○	
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		○		○			
6. 인적용역				○				
7.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야마추어 운동경기		○			△		△	
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1. 토지				○				
12. 수돗물	○			△				
13. 연탄과 무연탄						○		
14. 담배						○		
15.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등의 입장		○						
17. 여객운송용역		○						
18. 도서,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						
19.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자료출처 : 김유찬, 1995, 32~33면 참고 수정

※ ○은 강한 근거를, △는 약한 근거를 나타낸다.

제2절 부가가치세의 면세효과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부담의 완화를 실현하고, 여러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면세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면세효과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서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중간단계인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과세사업자가 이를 과세재화 또는 용역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구입시 부담하여 전가시킨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때문에 전가된 부가가치세액만큼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효과는 사실상 상쇄될 뿐 아니라 누적과세되며, 이러한 경우는 면세제도를 두지 않는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면세효과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수효과는 취소효과라고도 하는데, 특정 거래단계에서 적용된 세액의 경감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징수되어 국고에 환수됨에 따라 세액의 경감이 취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누적효과는 가산효과라고도 하는데 특정 거래단계에서 이미 징수된 세액이 후속거래단계에서 면세 등이 적용됨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해당 후속거래의 후속거래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징수세액 상당액이 다시 한번 더 징수됨에 따라 중복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중간단계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폐자원공제·면세포기제도를 이용하여 환수 또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만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면세제도로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의 약 3%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다(오기수·임종은, 2010, 159~161면).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1. 우리나라의 면세대상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항목들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 ② 수돗물
- ③ 연탄과 무연탄
- ④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⑤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 ⑥ 교육 용역
- ⑦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외

- ⑧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⑨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 ⑩ 판매가격등이 일정액 이하인 담배 등
- ⑪ 금융·보험 용역
- ⑫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⑬ 토지
- ⑭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일정한 인적(人的) 용역
- ⑮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 ⑯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등의 입장
- ⑰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
- 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
- ⑲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①’부터 ‘③’호까지, ‘⑪’ 및 ‘⑭’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⑤’ 및 ‘⑬’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⑮’는 같은 법 제106조의2, ‘⑯’은 같은 법 제10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 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 ②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학교 등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
- ③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④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 ⑤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⑥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⑦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⑧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
- ⑨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⑩ 일정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⑪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⑫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
- 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⑭ 임산물 중 목재펠릿
- ⑮ 농업 · 임업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 ⑯ 일정의 금지금(金地金)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면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항목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2. OECD 국가의 면세대상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OECD 표준범위에 비해 넓은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여건에 의해 과세와 면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부분에 있어 지나치게 면세적용 범위가 넓은 분야가 있으며, 기준이 모호하여 유사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정재호, 2002. 9, 17면).

OECD에서는 회원국들이 준용하도록 표준적인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면세범위를 우리나라의 면세범위와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윤태화 외, 2006, 258~259면). 부가가치세 체제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특징은 과세와 면세를 적용하는 업종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OECD에서 정한 표준면세 범위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각국의 면세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공통분모는 찾기 어렵다. 이는 이들 국가들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2]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 비교

구 분	면 세 대 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
OECD 표준면세를 우리나라에서 과세	도박, 상업용 건물의 임대와 공급, 상업적 문화사업
OECD 표준면세 이외의 우리나라의 면세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200원 미만), 국내제작이 곤란한 스포츠 경기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면세제,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의 급식, 농·어업용 유류,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 미식용농·임·축·수산물,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표 3]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개별 국가별 차별화

국명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에 대한 과세
오스트리아		임대(개인주택)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육아, 국민자를 위한 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다리의 통행료, 표준정부서비스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 건물의 공급·리스, 국내우편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장의업, 예술작품, 여행 안내업	극장·영화관
핀란드	공연업,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장남에 의한 상거래,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지와 건물의 리스(선택적)
프랑스	비영리기관의 기념관, 묘지 등의 건축 및 유지보수작업, 선물거래, 친환경재생물질 등	부동산 임대, 환자수송서비스
독일		-
그리스	법률서비스, 저작권, 예술활동, 공공방송 및 TV, 공공의 상수공급	문화상품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여행알선업	-
아일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 경기 입장료, 아동복지업, 장의업과 여행안내업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와 건물의 공급
이탈리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임대(표준세율)
일본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용품의 공급, 공공 서비스, 파생상품	의료업, 교육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금융서비스, 부동산 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잡지, 금화 및 은화, 지분, 국제 화폐거래, 금, 저작권, 여객운송업, 농임어업	우편서비스와 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네덜란드	화장·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작곡가, 작가, 언론인의 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부동산공급, 스포츠 숙박시설의 이용
뉴질랜드	-	우편서비스, 혈액, 인간의 장기, 의료서비스, 환자수송업, 자선활동,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서비스, 스포츠,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 임대(주거시설 제외),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5년 이상 동안 주거시설로 사용해진 토지와 건물 제외)
노르웨이	여객수송, 장의업, 호텔	우편서비스
포르투갈	농업	-
스페인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소비자가 대금을 치르는 일부 문화서비스
스웨덴	공공 TV와 라디오, 저작권, 공동묘지업, 사회사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특정 상업용건물의 임대
스위스	아동 및 청소년복지업, 사회사업, 사회안전서비스, 일정조건하에 대리 근로자의 공급, 중고품	주차, 특정임대업, 특정 은행서비스, 치과기공업
터키	해상인도와 보수작업, 사업용 항공업 또는 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교육과 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경감세율), 우편업, 상업용 건물의 매각, 임대, 라디오와 TV방송, 병원, 복권과 도박
영국	화장·장의업, 스포츠 경기, 특정고급호텔서비스	새 상업용 빌딩의 공급은 원료일로부터 3년 동안 표준세율로 과세. 허가된 클럽의 도박기계와 도박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가가치세체계를 지니고 있는 유럽국가 대부분의 경우, OECD 표준면세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며, 개별 나라들은 이 OECD 표준범위에 추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윤태화 외, 2006, 258~259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소득에 대한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의 [표 3]에서 보여준 면세제도 이외에도 경감세율 및 영세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부가가치세로 5%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법 제6조에는 자산의 양도 등 소비세법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소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 소비세의 비과세 특징은 국민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각종 요양과 방문간호요양, 그리고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입원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또는 의료비의 지급과 관계된 요양,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계된 지정노인방문간호 등 용역의 제공과 이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하는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음식을 비롯한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재화·용역과 자선·구호금품 등 사회복지차원의 재화·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모자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육아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7.5%로 높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감세율의 대상을 살펴보면 가사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변천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빈도

법의 개정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다. 시대의 흐름이 빨라지는 현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법의 개정이 빨라지고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4]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법 개정일자와 개정연도의 차이 연수 및 평균 개정 연수를 나타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평균 개정 연수는 약 1.8년이지만 2001년 이후에는 주기가 약 1.2년 정도로 단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조세법에 비해 법 개정이 많이 이루는 것은 아니다.

[표 4] 부가가치세법의 평균 개정 연수

년도	개정연도 편차(년)	비고
1976. 12. 22.	—	제정
1977. 12. 19.	1	일부개정
1978. 12. 15.	1	일부개정
1980. 12. 13.	2	일부개정
1988. 12. 26.	8	일부개정
1989. 12. 30.	1	일부개정
1993. 12. 31.	4	일부개정
1994. 12. 22.	1	일부개정
1995. 12. 29.	1	일부개정
1998. 12. 28.	3	일부개정
1999. 12. 28.	1	일부개정
2001. 12. 29.	2	일부개정
2003. 12. 30.	2	일부개정
2004. 12. 31.	1	일부개정
2006. 3. 24.	2	일부개정
2006. 12. 30.	0	일부개정
2007. 12. 31.	1	일부개정
2008. 12. 26.	1	일부개정
2010. 1. 1.	2	일부개정
2010. 12. 27.	0	일부개정
평균 개정 연수	1.8	

그리고 [표 5]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법령 개정일자와 개정연도의 차이연수 및 평균 개정 연수를 나타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평균 개정 연수는 약 0.7년이지만 2001년 이후에는 주기가 약 0.6년 정도로 단축된 것을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조문은 비교적 간단명료하여 다른 조세법에 비해 개정의 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반년에 한 번씩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보험용역·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등 주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5] 부가가치법시행령의 평균 개정 연수

년도	개정연도 편차(년)	비고
1976. 12. 22.	—	제정
1977. 12. 19.	1	일부개정
1978. 12. 5.	1	일부개정
1980. 12. 13.	2	일부개정
1988. 12. 26.	8	일부개정
1989. 12. 30.	1	일부개정
1993. 12. 31.	4	일부개정
1994. 12. 22.	1	일부개정
1995. 12. 29.	1	일부개정
1998. 12. 28.	3	일부개정
1999. 12. 28.	1	일부개정
2001. 12. 29.	2	일부개정
2003. 12. 30.	2	일부개정
2004. 12. 31.	1	일부개정
2006. 3. 24.	2	일부개정
2006. 12. 30.	0	일부개정
2007. 12. 31.	1	일부개정
2008. 12. 26.	1	일부개정
2010. 1. 1.	2	일부개정
2010. 12. 27.	0	일부개정
평균 개정 연수	1.8	

[표 6]은 1958년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된 이후 법 개정일자와 개정연도의 차이연수 및 평균 개정 연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빈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민법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민법이 제정된 이후 평균 개정 연수는 약 4년이지만 2001년 이후에는 주기가 약 2년 정도로 단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생활의 기본법인 민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세법의 경우는 법 개정의 빈도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법 개정이 많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탄력적인 법 개정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표 6] 민법의 평균 개정 연수

연 도	개정연도 편차(년)	비고
1958. 2. 22	-	제정
1962. 12. 29	4	일부개정
1962. 12. 31	0	일부개정
1964. 12. 31	2	일부개정
1970. 6. 18	6	일부개정
1977. 12. 31	7	일부개정
1984. 4. 10	7	일부개정
1990. 1. 13	6	일부개정
2001. 12. 29	11	일부개정
2002. 1. 14	1	일부개정
2005. 12. 29	3	일부개정
2005. 3. 31	0	일부개정
2007. 12. 21	2	일부개정
2009. 5. 8	2	일부개정
평균 개정 연수	4.0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제정 당시와 현재의 비교

부가가치세에 면세제도가 도입되는 일반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면세 규정의 변천은 1976년 12월 26일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과 2011년 2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 규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면세항목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표 7]은 부가가치세법상 제정 당시 면세규정과 현행 면세 규정을 비교한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은 18건으로 이를 단순히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항목과 비교하면 이 중 개정된 항목은 11건으로 약 61%이다. 법 제정 당시 면세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면세항목은 6건으로 약 39%이다. 면세 규정 중 법 제정 당시 없었던 것으로 신설된 항목은 1건으로 여성의 복리후생을 위한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면세이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제11호의 부동산 임대이다. 제정 당시에는 모든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면세하였는데 1980년 12월 법 개정으로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축소하였다. OECD 표준 면세범위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도 면세이다.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등 주요 면세대상의 면세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개정에 따른 명확한 면세과정의 변천은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면세관련 모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너무 많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주요 차용개념의 면세 조항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 변화는 해당 부분에서 분석 한다.

[표 7]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정 당시와 현재의 비교

1976.12.26 제정(부가가치세법 제12조)	2011.1.10 현재(부가가치세법 제12조)	비고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수산물과 임산물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개정
2. 수도물	2. 수도물	-
3. 연탄과 무연탄	3. 연탄과 무연탄	-
-	3의 2.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2003.12.30. 신설)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과 혈액	4. 의료보건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1980.12.13. 개정)	개정
5. 교육용역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 또는 택시에 의한 용역은 제외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03. 12.30. 단서개정)	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과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06. 12. 30. 개정)	개정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9. 전매품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1. 4. 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2006. 12. 30. 법령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1. 4. 7. 개정)	개정
10. 금융·보험용역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부칙	개정
11. 부동산임대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 개정)	개정
12. 토지	12. 토지	-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12.28. 개정)	개정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과 비직업운동경기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과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개정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예의 입장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예의 입장	-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3. 12. 30. 개정)	개정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연도별 개정 이유

[표 8]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이 개정되는 각 연도별 개정이유와 면세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개정된 면세 규정의 개정이유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시된 법 개정이유를 참고하여 주된 이유를 간략화한 것이다. 면세항목의 개정이유는 주로 과세중립과 과세형평·복리후생·세수확보·소비확대, 그리고 과세부적합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면세항목의 개정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총 개정사항 18건 중 11건인 약 61%가 과세형평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그밖에 세수확보 측면에서 개정된 항목은 2건이며, 나머지는 과세중립, 소비확대, 복리후생에 각각 1건씩이다. 면세규정의 개정이 면세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와 축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총 18건 중 10건인 약 56%가 면세범위를 축소한 것이며, 나머지 8건인 약 44%가 면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면세범위의 축소는 주로 과세형평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며, 세수확보를 위하여 2건이 있다. 면세범위 확대의 경우에도 주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이루어 졌지만 과세중립, 소비확대,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이루어 졌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세수확보 차원이라 할 수 있다(오기수, 2005, 29~57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의 변천을 연도별로 살펴볼 때 주요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1980년의 경우 개정전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은 요소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사실상 요소소득 비중이 적으므로 주택임대를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② 1998년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인적

[표 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연도별 면세규정의 개정 요약

연도	개정내용	개정이유	면세범위
1980	① 고속여객선등 특종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②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1988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 면세함	과세중립	확대
1996	전자출판물을 면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확대
1998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등 전문 자격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세수확보	축소
	② 전매품 및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함	세수확보	축소
	③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면세대상에서 제외	과세형평	축소
1999	대중예술행사를 면세대상으로 함	소비확대	확대
2000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원생 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 중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추가하여 면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확대
2001	① 상업방송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②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을 면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확대
2003	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면세대상으로 함	복지후생	확대
	② 고속철도의 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③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수입물품에 대하여 직접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확대
	④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우편물 송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⑤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⑥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형평	축소
2006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	과세형평	확대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전매품 및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였다(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면세대당에서 제외하였다.

③ 2003년의 경우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생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켜 과세하도록 하였다.

위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1980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관련 다음과 같은 조항의 개정에서는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임입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임 입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의료보건의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⑥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⑧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장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필요성과 해석

제1절 차용개념의 필요성

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이라고 한다면 조세법은 개별행정법으로서 공법에 속한다. 문제는 조세법이 이처럼 공법이면서도 다른 어느 행정법분야보다 사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조세법과 사법의 이러한 밀접성은 조세가 원칙적으로 경제적 거래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경제적 거래행위의 완성은 원칙적으로 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요건의 충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건에 대한 매매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행위 자체에 대한 실체법적 규율은 사법에서 하지만 매매에 따른 매도인, 매수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법에서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법과 사법의 밀접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적’ 이어서, 한편으로는 사법적 질서가 조세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법적 질서가 사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흔히들 조세법과 사법의 관계라고 하면 전자를 전제한다(이동식, 2002, 461~462면).

이러한 조세법은 민법, 상법 등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예: 이자, 배당, 상속, 증여 등)가 많다. 이런 현상을 조세법에서 사법개념의 차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드시 조세법과 사법 사이에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사법 이외의 다른 법분야에서 고유성을 가진 개념을 조세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로 조세법상의 차용개념은 조세법 이외의 법 분야에서 이미 고유성을 가진 개념을 조세실체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개념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차용개념이란

조세법상 법해석·적용과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 중에 그 이론적 연원을 조세법이 아닌 다른 법(주로 사법)에 두고 있는 용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조세실체법에서 창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예: 소득, 과세표준, 원천징수 등)를 차용개념에 대응하여 고유개념이라고 한다.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개념이 곧 고유개념이므로, 사회학·경제학·자연과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같은 개념을 조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용개념이 아니라 고유개념에 속한다. 고유개념은 사회생활상 또는 경제생활상의 행위나 사실을 다른 법 분야의 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조세법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개념의 의미나 내용은 실정 법규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조세법 독자의 견지에서 이를 밝히면 그만이다. 다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을 조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학문상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강인애, 1989, 87~89면).

이와 같이 조세법상의 차용개념은 조세법의 선택적 개념이 아니라 필요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제행위의 규율인 사법의 개념이나 용어를 배제하고 고유개념만을 가지고 조세실체법을 입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용개념은 경제행위 속에 함축된 개념을 조세법에서 그대로 받아드림으로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제현상의 사법질서를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차용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차용개념의 문제점

차용개념 중에는 조세실체법 스스로가 그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예컨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이자의

배당,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담배²⁾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차용개념을 다른 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세징수의 확보 내지 조세부담공평의 관점에서 그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조세법의 차용개념이 단일 사법에서 사용되지 않고 복수의 사법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법 자체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개념이라면 조세법의 해석과 개념의 범위가 문제이다. 따라서 차용개념의 문제점은 다른 법 영역 특히 사법에서 차용된 용어를 조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용어를 다른 법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가 조세법의 주요 문제로서 널리 논의되어 왔다.

물론 차용개념을 그 본래의 의의와 다른 의의로 해석하는 것이 징수확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 상법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보의 요청이나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의 요청에 보다 적합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필요한 입법적 준비를 함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조세입법과정에서 법형성의 본연의 자세로서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청과 징수확보 또는 공평부담의 요청이 대립하는 국면이 생긴 경우에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과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과 어느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에 귀착된다. 이러한 차용개념에 관하여는 별의에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서 명백히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별의로 해석하는 것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희생하여 입법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된다(홍광식, 1994, 579~580면).

차용개념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설, 독립설, 목적적합설의 세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주된 논점은 조세법의 독자성이며, 차용개념을 조세법에서 사법과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1) 통일설

통일설은 법질서의 일체성과 법적안정성을 기초로 하여 차용개념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Henssel은 법치국가원칙에 따른 법해석을 중시하고 그를 위하여 입법자는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가능한 한 일의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과세요건이 민법의 형식과 법개념에 결부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조세법개념은 사법개념과의 동일성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법의 개념은 경제적 관점을 고려한 목적적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독립설의 주장에 대해, 목적해석이란 모든 경우에 경제목적에 따른 해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법적 안정성 및 법적 단일성의 의미에서 다양

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Geiler 역시 법적 개념의 형성은 입법자의 자주적 권한이며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차용개념의 독자적 해석은 거래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김민호, 2002. 4, 26~36면).

독일에서는 19세기 이래 통일설이 지배하여 오다가 1919년 조세기본법 제4조에 경제적 관찰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부터 동법의 입법자인 Enno Becker의 주도 아래 독립설이 강력하게 주장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통일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강인에는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원리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 점, 차용개념은 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납세자의 사적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법상의 가치기준에 따라 그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 질서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질서의 일부이므로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일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³⁾도 대체적으로 통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강인애, 1989, 87~89면).

3)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58 판례 참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 “1963. 1. 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 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957. 3. 16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비록 그 매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에 시행된 구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설시의 계약일자에 본건 토지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적용기준일인 1963. 1. 1. 당시에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법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 “1963. 1. 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본건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억제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독립설

독립설은 차용개념을 사법상의 개념정의에 구애됨이 없이 조세법의 목적과 경제적 의의를 고려한 조세법 개념으로서의 독자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사법과 세법은 그 이념을 달리 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개념의 정의도 독립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Enno Becker는 조세법은 경제발전과 경제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민사상 법률관계로부터 조세의 결론을 모두 도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세법이 민사법으로부터 유리되는 경우에는 조세법의 특별규정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Becker는 조세법에 대한 개별적 검토의 이유를 조세법의 미성숙에서 찾고 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은 현실의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하여 법적 확실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결국 조세법적 사물은 사물 그 자체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조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적 기초에 결부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민호, 2002. 4, 26~36면).

독립설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Ball은 조세법과 사법은 그 영역의 기초가 재산법이며 많은 면에서 동일한 생활관계와 생활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통상의 경우 사법으로부터 인식된 것과 같은 개념용어를 사용하지만, 조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법개념은 원칙적으로 민법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세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순수 사법개념의 내용에만 과세하려는 경우, 사법개념의 적용이 조세법의 목적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법상 사법개념의 직접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사법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홍광식, 1994, 561~564면).

차용개념에 대해 조세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사법에서와 다른 내용의

로 조세법상 개념정의를 해 둔 경우에 그 개념은 조세법에서 당연히 사법에서와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또 반대로 조세법인 명시적으로 차용개념을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차용개념은 조세법에서도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이라도 그 개념이 위치한 문자의 의미연관성, 취지, 목적 등에 따라 개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위 “개념의 상대성”이 법이론적으로 널리 확인된 바이고 사법과 조세법은 분명히 독자의 가치체계를 가진 독립법임도 분명하다고 본다면 결국 어느 개념의 이론적 연원이 사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념을 조세법에서도 반드시(또는 가능한 한) 사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하나의 차용개념이 조세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개념이 위치하고 있는 조세법규정의 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차용개념이 조세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법과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엄격한 사법의존적 차용개념 해석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을 조세법에서 반드시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해석해야만 법적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이해라고 보여진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차용개념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에서도 사법에서의 의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 조세법이 사법의 부속법이 되어야만 법적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법해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법적 안정성 이외에 다른 것(조세공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이동식, 2002, 467~469면).

(3) 목적적합설

목적적합설은 조세법에 있어서도 목적론적 해석이 타당하므로 조세법 해석의 독자성에 의하여 차용개념의 의의는 이를 규정한 법규의 목적과 관련하여 탐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목적적합설에 의하면, 조세법의 모든 규정은 그 취지, 목적에 따라 해석할 것이므로, 조세법상의 개념을 고유개념과 차용개념으로 구분할 의미와 실익이 없게 된다. 그리하여 목적적합설을 지지하는 田中二郎은 고유개념과 차용개념이라는 용어나 구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목적적합설을 따를 경우 조세법의 모든 규정은 그 취지·목적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조세법상의 개념을 고유개념과 차용개념으로 분류하는 의미가 상실된다. 田中二郎 박사가 고유개념과 차용개념이라는 것 같은 용어나 구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혹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통일설과 목적적합설이 각각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설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설이라고 하더라도 차용개념에 관하여 조세법규가 그 의의를 명문으로 정하여 수정하고 있는 경우와 명문의 정함이 없더라도 규정의 취지나 의미관련에서 그것을 별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그 본래의 의의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적적합설도 그 본래의 의의에서 자유로운 해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적적합설을 취하는 경우에 차용개념에 관하여 어떠한 자유로운 해석이 되기 쉽고 그 결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각각 목표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평한 과세나 징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희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납세의무가 각종의 사적 경제거래에 따른 것이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당하여 그것이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factor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적 안정성

이나 예측가능성의 필요성을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홍광식, 1994, 573면).

제3절 차용개념과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필요성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말로 표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고도화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사상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변화가 매우 심하므로 이에 따른 조세 문제도 복잡화·전문화하여 고도의 기술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아무리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는 불가피하게 필요악으로서 조세법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조세법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위임입법이 백지수권적 이어서는 안된다(최명근, 1998, 76~89면).

따라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된다.

첫째, 오늘날의 복지국가·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국가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입법대상의 확대에 인하여 위임입법이 필요로 한다.

둘째, 국회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입법사항에 대한 전문적·세부적

사항까지 잘 알지 못하므로 그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정통한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의 흐름이 빠르고 새로운 경제현상이 분초를 다투는 현실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입법이 필요한데, 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회입법보다는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위임 입법이 필요하다.

아무튼 조세법은 경제현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보다 위임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위임 입법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 입법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상의 국회 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임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규율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위임 입법의 금지가 아니라 그 한계이다.

2. 차용개념의 변화에 대한 위임입법

경제활동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법에서 차용개념을 배제하고 입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차용개념이 조세법에 규정되는 초기시점의 개념과 현재시점의 개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세법의 주된 과세대상이 사회현상 중에서 경제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즉, 현대의 고도화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현상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가 매우 심하므로 이에 따른 조세법의 차용개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금융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금융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된 1976년도의

시점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확대되었다. 새로운 파생상품의 출현과 금융지주회사, 리츠(REITs)⁴⁾, 모기지론(Mortgage Loan)⁵⁾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용역을 면세하는 규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조세법과 관련된 이러한 경제현상의 변화로 해당 차용개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의 흐름이 빠르고 새로운 경제현상이 촌각을 다투는 현실에서는 입법과 개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위임입법인 시행령에 차용개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새로운 금융현상이 발생하면 법은 그 대로 두고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차용개념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 중 주요 차용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용역·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의 경우 그 면세범위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회적 환경과 경제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법을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경제흐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법적인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가 있다. 이 때 법과 시행령 어느 쪽

4)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이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5)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에서 개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탄력적인 편의성의 문제이다. 경제적 시차적 요인에 의하여 차용개념에 발생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위임입법에 의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쉽다. 따라서 차용개념이 변화무상한 경제사상과 연관되어 그 범위가 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등 명령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조세 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3. 위임입법에 의한 차용개념 제한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유개념도 있지만 ‘의료보건의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등 차용개념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용개념들은 실생활에서도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개념들을 규율하고 있는 사법들조차 관련법이 많고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법에서 이러한 차용개념들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임입법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다. ‘법률의 위임’이라 함은 일정한 과세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으로서 규정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수권에 의하여 발하여지며, 그 성질에 있어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보충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위임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임명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임한 법률에 종속한다. 따라서 위임명령의 발효시기·내용·효력상실 등은 모법의 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임명령은 법률(모법)에 위반하는 것은 규정할 수 없으며, 모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때는 위임명령도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형식에는 일반적·포괄적 위임과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행정기관에게 입법의 권한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말하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은 법률이 그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정의 행정기관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위임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독재와 기본권의 무제한적인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법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도 제75조 전단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형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중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국민후생용역의 일종이라고 할 보험용역의 최종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감경시킨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보험자인 국민의 세부담을 감경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보험용역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분명히 드러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권○○의 반대의견에 따르면 “다수의견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규정한 ‘보험용역’의 개념이 불명확한지 여부만을 따진 뒤에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위배 여부를 전체적으로 심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를 전혀 심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살피건대, 위 법조항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법조항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의 범위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면제 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차용개념의 범위를 환경변화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새로운 경제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하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에 차용개념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어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현상이 변화하여 차용개념이 변화하여도 조세법이 규정한 합목적성이 퇴색되지 않고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에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6) 2002. 4. 25. 선고 2001헌바85.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의 차용개념

차용개념이란 조세법이 사법(私法)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차용개념이란 다른 법분야에서 이미 고유성을 가진 개념이나 용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차용개념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률용어 중에 그 이론적 연원(淵源)을 조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 두고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조세실체법에서 창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를 차용개념에 대응하여 고유개념이라고 한다. 고유개념은 다른 법분야의 규정되지 않는 것을 직접 조세법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개념의 해석과 집행은 실정 법규의 취지와목적에 비추어 조세법만의 독자의 견지에서 이를 밝히면 그만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개념과 용어는 경제생활의 개념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과 같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경우 고유개념보다는 차용개념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 면세제도의 차용개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대상의 재화와 용역 중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을 말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은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직결된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고유개념보다는 대부분이 차용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인데 그 중 ‘①, ④, ⑭’와 ‘⑮의 일부’ 이외의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은 차용개념으로 볼 수 있다. 16개의 법조문 중에서 10개의 조문이 차용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①, ④, ⑭’와 ‘⑮의 일부’의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고유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 ② 수돗물
- ③ 연탄과 무연탄
- ④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⑤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 ⑥ 교육용역
- ⑦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은 제외)
- ⑧ 도서(도서대여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
- ⑨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 ⑩ 담배
- ⑪ 금융·보험 용역
- ⑫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 ⑬ 토지
- 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人的) 용역
- ⑮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 ⑯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등의 입장

[표 9]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 중 차용개념으로 볼 수 있어 다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차용개념에 대한 정의는 조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은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직결된 경제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고유개념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차용개념으로 구성되어 졌다고 본다.

[표 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대상과 차용개념의 다른 법

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대상	차용개념의 다른 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
2	수도물	수도법 등
3	연탄과 무연탄	석탄산업법 등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보건의료기본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등
6	교육용역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7	여객운송 용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선박안전법, 항공법, 사도·궤도법, 철도건설법 등
8	도서,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9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우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10	담배	담배사업법
11	금융·보험·용역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13	토지	지방세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4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人的) 용역	—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국민체육진흥법 등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등의 입장	도서관법 등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차용개념들 중 근간에 면세의 폐지 또는 축소가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시행령에 면세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금융용역’과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을 주요 차용개념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적 개념을 살펴보면 ‘금융용역’은 ‘금융’과 ‘용역’의 합성어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융’은 차용개념이며, ‘용역’은 고유개념이다. 사회생활상 또는 경제생활상의 행위나 사실을 다른 법분야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은 고유개념이므로 ‘용역’은 여기에 속한다(강인애, 1989, 88면). 일반적으로 용역(用役)은 물질적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① 건설업
-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③ 운수업
- ④ 금융업·보험업
- ⑤ 부동산업·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⑥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⑦ 교육서비스업
- ⑧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⑨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⑩ 가사서비스업
- ⑪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⑫ 통신업
- ⑬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 ⑭ 사업서비스업

따라서 ‘용역’이란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상 명확히 정의한 고유개념으로 해석·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다. 문제는 금융, 의료, 보건, 교육 등의 차용개념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면세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자는 논의와 함께 관련 법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용개념의 범위가 변화하는 이유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많은 분야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경제흐름을 순간화 하였기 때문이다.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차용개념

1. 금융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융용역을 면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으로 인한 이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융과 이자의 관계는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면서 발생한 은행업의 시초인 대부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후 은행의 역사는 BC 17세기에 기록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는 재산의 단순한 기탁 외에도 기탁된 재산의 운용이나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규정도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⁷⁾ 아무튼 이러한 은행은 지속적인 발전과 업무영역의 확대, 새로운 금융 형태와의

7) 네이버 백과사전.

결합 등으로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은 현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새롭게 강조되었다. 세계적으로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주식과 채권 등을 넘어서 선물(先物), 옵션(option) 등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기법들이 출현해 금융 시장 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복잡해졌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헤지펀드(Hedge fund)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본도 등장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유통시장이 독립적으로 팽창되고 있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이론적인 근거는 이들 용역이 부가가치 창출의 투입 요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게 되면 그 거래의 다음 단계에서는 과세받은 세액만큼 전단계매입세액⁸⁾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된 구성요소액 만큼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크게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최명근, 2002, 238면). 예를 들면, 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지대·임금·이자·이윤)의 합계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과 차이가 나고, 또한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여서 대출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을 매출액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난 뒤, 투입요소인 자산구입비·비품·소모품·전력비 등 투입요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는바, 이자를 면세로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금액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모순점이 발견되게 된다.

8)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매입액×세율).

한편, 우리 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⁹⁾ 체제인바, 이 형태의 부가가치 계산은 일정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로 보는 방법이다. 이는 결국 임금·지대·이자·이윤·감가상각비 합계액에서 총투자액을 차감하거나, 아니면 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도 이자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는 이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자의 구성이 돈의 시간적 가치, 자금회수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자와 수수료의 구분이 쉽지 않고, 설혹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구분과 특히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들 수 있다(안창남, 2002, 183~184면).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이유로 이론적인 근거뿐만 아니고 조세정책적인 부분과 조세제도의 간편성 부분도 있다. 조세정책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의 재분배 측면도 있지만 소비세의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특정의 소비지출에 관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나타나 “가난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큰 조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역진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간편성 부분은 조세는 간편하고 체계적이며 명확하여야

9)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총매출액)-중간재구입액-자본재구입액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총투자액(자본재구입액)
 =임금+이자+이윤+지대-순투자액(자본재구입액-감가상각비)

한다는 것이다. 금융용역의 경우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는 점은 조세제도의 간편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때 간편성(simplicity)에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이 있다. 부가가치세법도 이 간편성 때문에 면세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용역의 면세이다(김완순, 1987, 334~335면).

첫째로, 무엇이 과세대상이고 무엇이 과세대상이 아닌지를 납세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로, 과세표준의 정확한 정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납부세액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공급가액의 결정 등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셋째로, 세제가 전체적인 일관성 내지 체계성을 상실하면 간편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도 곤란하다.

넷째로, 조세행정상의 용이성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의미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금융’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금융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용역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역무 등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한다.

㉠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업
 - ㉧ 투자신탁업
 - ㉨ 투자회사업
 - ㉩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 ㉫ 어업권
 - ㉬ 광업권
 - ㉭ 그밖에 위 ‘㉪’부터 ‘㉫’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 신탁업
 -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

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 ㉡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투자유한회사업
- ㉤ 투자합자회사업
- ㉥ 투자조합업
- ㉦ 투자익명조합업
- ㉧ 단기금융업
- ③ 전당포업
- ④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업
- ⑥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⑦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⑧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
-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2010. 12.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⑫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은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⑮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⑯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가 동법에 따른 위탁자산 관리·운영용역
- ⑰ 그 밖의 금전대부업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해당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제공한 금융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¹⁰⁾

한편 금융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간의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0) 2006. 6. 30. 국심 2005서2898.

있다. 이는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되 조세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부 특정한 대행용역 및 수수료거래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①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③ 부동산의 임대용역

④ 위 ‘①’과 ‘②’와 유사한 용역 및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금융·용역의 과세로는 새로운 금융·관련 상품과 금융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역무를 업무형태로 분류하면 은행업, 신탁업, 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전당포업, 환전업, 보증업, 채권추심용역, 자산유동화사업, 자산관리사업, 위탁자산 관리·운영용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업과 전당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의 이론적 근거인 이자와는 상관성이 약한 역무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차용개념인 ‘금융·용역’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금융·용역의 면세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도 금융·용역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금융사업자 중심으로 해당사업자가 제공

하는 역무를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 중 일부를 과세형평과 과세중립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임 명령인 시행령이 금융용역의 과세와 면세의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는 금융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로 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의 범위는 오로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성식, 2008, 231면).

3. 다른 법령에서 ‘금융’의 의미

‘금융’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은행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보증기금법·주택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산업발전법·한국투자공사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에는 금융이란 총괄적인 개념보다는 금융산업의 분야별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들 중에서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이론적 근거의 부가가치 요소인 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은행법을 먼저 살펴보고, 금융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은행법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5에는 “금융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 ㉠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 ㉡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 ㉢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 그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표 10]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의 정의는 면세대상인 ‘금융’에 대한 차용개념을 가장 좁은 범위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본다.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을 ‘은행업’이라고 정의한 것은 부가가치 요소인 ‘이자’와 직접관련 업무로 금융용역의 기본적인 역무이기 때문이다. “이자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

[표 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코드	구분	코드	구분
K	금융 및 보험업(64~66)	K6513	사회보장 보험업
K64	금융업	K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K641	은행 및 저축기관	K65121	손해 보험업
K6411	중앙은행	K65122	보증 보험업
K64110	중앙은행	K65131	건강 보험업
K6412	일반은행	K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K64121	국내은행	K652	재 보험업
K64122	외국은행	K6520	재 보험업
K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K65200	재 보험업
K64131	신용조합	K653	연금 및 공제업
K64132	상호저축은행	K6530	연금 및 공제업
K64139	기타 저축기관	K65301	개인 공제업
K642	투자기관	K65302	사업 공제업
K6420	투자기관	K65303	연금업
K64201	자산운용회사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K64209	기타 투자기관	K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K649	기타 금융업	K6611	금융시장 관리업
K6491	여신금융업	K66110	금융시장 관리업
K64911	금융리스업	K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K64912	개발금융기관	K66121	증권 중개업
K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K66122	선물 중개업
K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K6619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K6499	그외 기타 금융업	K66191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K64991	기금 운영업	K66192	투자 자문업
K64992	금융지주회사	K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K64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K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K651	보험업	K66201	손해사정업
K6511	생명 보험업	K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K65110	생명 보험업	K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 면세의 근거를 업무와 관련시키면 바로 은행법에 정의한 은행업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은행업’ 이외의 금융용역들 중 일부는 이런 은행업의 변형내지는 관련성이 적은 역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면세의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른 ‘금융업’은 산업상 분류된 것으로 ‘금융’에 대한 차용개념을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본다.

(2)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금융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른 ‘금융업’의 범위를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기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금융업의 정의는 똑같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보다는 금융업의 영업 범위를 단순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용역)를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금융용역’의 변화

차용개념은 사회환경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1976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면세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경제흐름과 세수확대 등의 원인에 의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금융용역은 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번 개정되었다. 1980년에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개정하여 그 동안 위임명령 없이 면세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헌적인 사항을 시정한 정도였다. 금융용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이 빈번하여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는 세 번이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행령 개정의 대부분은 ‘금융용역’의 면세대상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시행령이 제정된 당시에는 [표 11]의 내용처럼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은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전당포업, 환전업, 단기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신용보증기금업, 보험업, 기타 금전대부업 등 11가지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모든 역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가장 큰 변화는 [표 11]과 같은 2000년 12월 29일의 개정이다.

2000년 1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금융영역의 면세대상을 “법령이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의무”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차용개념인 금융용역의 범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

[표 11]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주요 개정 비교

1976년 12월 31일 제정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 2. 증권업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사업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에서 ‘용역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용역의 면세목적에 부합되는 법령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업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내용도 ‘사업자 열거’에서 현재의 시행령 규정처럼 “해당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업무”로 열거하였다. 이것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범위를 해당 법령에 따르는 차용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용역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문제는 금융용역의 실질적인 범위를 다른 법령에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융용역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용역의 면세 범위가 조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차용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가 추구하는 합목적성과는 다른 ‘유사금융용역’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짐으로서 과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신설하였다.

- ①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②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 ③ 부동산의 임대용역
- ④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그동안 사업자 중심의 금융용역 면세로 발생하는 ‘유사금융용역’ 등을 과세의 중립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동 조항은 신설된 이후 몇 번의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처럼 ‘금융유사용역’에 대한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처럼 해당 법령에 의한 사업자가 법이 정한 금융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법률이 은행법을 포함하여 무려 22개에 달한다. 이는 과세당국이 은행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업무영역의 변화를 항상 추적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법 등 해당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가 법목적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

의 금융업이 발생되고 관련 사법이 금융업으로 규정하여 면세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용개념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확대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충실하지 못한 일이다.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차용개념

1.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며, 재화나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부가가치세제의 가장 큰 문제인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며,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는 근거는 복리후생적 측면이 있다. 김유찬은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사회적 관점에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면세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관점이란 국민의 복리후생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는 공급보다는 소비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는 의료보건용역의 저가공급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저가의 의료보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지수가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건강

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척도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또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고 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의미

현행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임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료보건용역을 의료법 등 12가지 법률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다음과 같은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 쌍꺼풀수술
- ㉡ 코성형수술
- ㉢ 유방확대·축소술

- ㉠ 지방흡인술
- ㉡ 주름살제거술
- ②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④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⑤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⑦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⑧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용역
-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⑩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⑪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⑫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⑮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규정처럼 “해당 법령에 의한 면허자 또는 사업자가 법이 정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장의용역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12가지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고, 해당 법령에 열거된 의료보건용역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보건용역’의 차용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차용개념인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의료보건용역의 면세와 과세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도 의료보건용역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의료법 등 다른 법에 자격을 받은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위임 명령인 시행령에 의료보건용역의 과세와 면세의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에는 의료보건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자격자 또는 면허자 중심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해당 면허자 등이 면세목적에 맞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이유로 “의료용역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을 과세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행처럼 시행령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를 ‘사업자 중심’으로 판정할 경우 논란의 여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법을 개정할 때마다 즉흥적이 이유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하는 것은 차용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차용개념의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목적과는 상관없이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확대되는 것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면허받은 의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불법시술이나 낙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면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3. 다른 법령에서 ‘의료보건’의 의미

의료보건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의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수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에는 의료보건이란 총괄적인 개념보다는 의료보건용역의 분야별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는 의료에 대한 정의나 업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보건용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의료법 등 관련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따르면 의료보건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의료보건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의 의료보건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2)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제1조)”을 두고 제정한 법이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③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④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⑤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료보건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제정한 법이라 측면에서 의료보건의 개념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진찰·검사
-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④ 예방·재활
- ⑤ 입원
- ⑥ 간호
- ⑦ 이송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수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건의료용역의 범위에 속하는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업무의 범주는 위생관련 업무라고 본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① 음료수의 처리
- ②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 ③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④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⑤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⑥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동 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의료보건용역의 개념에 위생부분이 포함되고 있으며, 위생의 개념은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업무”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변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은 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번 개정되었다. 1980년에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라고 개정하여 그 동안 위임명령 없이 면세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헌적인 사항을 시정한 정도이다. 시행령의 경우는 197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표 12]처럼 제정 당시 시행령 제29조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접골업·안마업·침구업·장의업 기타 의료보건 위생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2월 31일 시행령 전체를 개정하였는데 특징적인 사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 그리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에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위임한 면세대상 ‘위생용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면세대상이 되는 위생용역의 공급은 일반사업자는 할 수 없고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자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표 12]는 해당 개정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12]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주요 개정 비교

1976년 12월 31일 제정	1980년 12월 31일 개정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접골업·안마업·침구업·장의업 기타 의료보건 위생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6호는 전과 같음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차용개념

1.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교육(教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과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발달시키고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사회인으로서 소속된 가정·지역사회·국가·국제사회 등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흥미·개성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공헌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도 있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에게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일생적인 활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본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이념을 정의하고 있다.

11) 위키백과 참고.

이러한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용역은 우리생활의 필수용역이며, 공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의미

부가가치세법에서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素質)과 가능성(可能性)을 전체적으로 발달시키고,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것은 소비자인 개인에게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교육의 결과는 사회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전제 조건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되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자와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들이 공급하는 지

식 또는 기술의 유형은 불문하며 교육대상도 불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무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리교육은 과세하고 비영리교육은 면세한다는 과세 기준의 국제화와 과세품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다른 법령에서 ‘교육’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¹²⁾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교육관련 법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차용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

1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교육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는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따르면 교육이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교육이념으로 매우 추상적이며 보다 실질을 강조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교육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의 교육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원적 개념이라고 본다.

(2) 평생교육법

헌법 제31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

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의 관념적 한계에서 탈피해 삶의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및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즉, 평생교육은 직업의 종류와 인간의 취미만큼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의미와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이 면세하고자 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 헌법적 의무를 고려한다면 평생교육 또한 면세되어야 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¹³⁾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②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13)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③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④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⑥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인가와 허가는 학교교육 이외의 거의 모든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의 전제조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 학원 등에 의한 교육은 모두 과세된다.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용역’의 변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용역은 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번 개정되었다. 1980년에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고 개정하여 그 동안 위임 명령 없이 면세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헌적인 사항을 시정한 정도였다. 시행령의 경우도 197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개정되었다. [표 13]처럼 제정 당시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93년 12월 31일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30일 개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

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표 13]은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주요 개정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13]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주요 개정 비교

1976년 12월 31일 제정	1993년 12월 31일 개정	2010년 3월 30일 개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제30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5절 다른나라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법 규정과 면세범위

1. 금융용역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우리나라 처럼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같이 당해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면세의 대상이 되는 공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이성식, 2008, 234~235면).

- ① 영국의 경우 : 보험, 예금, 공제, 유가증권의 이전 또는 수취 (VATA, Schedule § 9)
- ② 독일의 경우 : 신용공여와 중개, 여신거래, 유가증권거래와 이의 중개, 보험 (UStG § 4 VIII, X)
- ③ 프랑스의 경우 : 신용조사, 기금의 유치·지급·대출 등과 관련된 거래, 통화 및 수표와 관련된 거래 (CGi § 261C)
- ④ 일본의 경우 : 유가증권 등의 양도, 이자를 대가로 하는 대출, 신용보증(消費稅法 別表 1).

일본은 소비세법 제6조에 “국내에 있어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등 가운데, [별표 1]로 열거된 것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별표 1]의 2와 3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금융용역등의 면세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증권거래법(소화 23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골프장 그 외의 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6조 제1항 제7호(정의)에 규정하는 지불수단(수집품 그 외의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

3. 이자를 대가로 하는 대출금 그 외의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자산의 대부, 신용의 보증으로서의 역무의 제공,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동운용신탁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정의)에 규정하는 공사채투자신탁 혹은 동항 제15호의2에 규정하는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과 관련되는 신탁보수를 대가로 하는 역무의 제공 및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역무의 제공[해당 보험료가 해당 역무의 제공과 관련되는 사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와 그 외의 부분과에 구분해서 지불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계약으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보험료(해당 비용의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한정한다)를 대가로 하는 역무의 제공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들과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

영국의 경우 ‘금융용역(Finance)’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의 별표 9(Schedules 9 : Exemptions)¹⁴⁾의 5 그룹에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고시(notices)에 의하여 열거되고 있다.¹⁵⁾ 그 주요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화폐·유가증권·어음·환어음의 발행, 양도, 인수 또는 거래하는 것
- ② 채권의 양도
- ③ 할부구매, 조건부판매, 외상판매의 경우 할부금융 제공
- ④ 할부구매, 조건부판매, 외상판매에서 관리협약, 증서, 상품 권리권 양도의 제공
- ⑤ 중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어음 등의 용역의 제공
- ⑥ 유가증권 또는 제2차증권의 발행 양도 인수·거래

14) <http://www.hmrc.gov.uk/index.htm>.

15) 701/9 Derivatives and terminal markets; and 741 Place of supply of services.

[표 14] EU회원국의 금융용역에 대한 취급례

용역의 내용	법상취급
자금이체(전신송금·어음교환·상업송장 등의 발행)	면세(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면세포기 허용, 일본은 과세)
지급보증	과세
신용장 발급	면세(멕시코는 과세)
선물거래(금융선물, 상품 선물, 선도계약 등)	• 과세 : 프랑스 • 영세율 : 영국 • 면세 : 오스트리아·그리스·아일랜드·헝가리·포르투갈
	• 과세대상 제외 : 독일
옵션거래	과세[영국의 경우 최종시장(terminal market)에서는 영세율]
채권추심	• 과세(벨기에의 경우 진성어음에 한하여 과세) • 면세 :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 수표·환어음 및 기타 상업서류에 관련된 채권회수용역에 한하여 면
	• 과세대상 제외 : 노르웨이
대여금고	과세
금융자문	과세(벨기에의 경우 법률자문용역은 면세)
자금운용	• 영국·캐나다·핀란드 및 룩셈부르크 : 과세 • 기타의 국가 : 연금과 같은 법률에 의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에 한하여 면세

자료출처 : 안창남, 2002, 186~189면.

[표 14]는 EU회원국의 금융용역에 대한 나라별 면세와 과세의 적용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그 결과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는 법제정의 목적에 따라 은행의 기본업무인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한 수입이자, 유가증권의 인수매매 및 대여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 한하여 면세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생산요소가 아니거나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또는 주로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누적과세를 유발하는 각종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수입의 탄력성이나 과세의 공평성이라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의료보건용역

영국의 경우 ‘의료보건용역(Health and welfare)’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의 별표 9(Schedules 9 : Exemptions)¹⁶⁾의 7 그룹에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고시(notices)에 의하여 열거되고 있다.¹⁷⁾ 영국의 경우 면세대상의 의료보건용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 면허의 전문자격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점은 의사 등이 제공한 모든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주요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사 등과 안경사가 공급한 서비스
- ② 간호사, 산파의 제가서비스
- ③ 보청기
- ④ 보철 또는 치과 서비스
- ⑤ 약사 서비스
- ⑥ 케어(care) 또는 의학적, 외과적 처치용 재화를 병원 등에 공급
- ⑦ 의료전문변호인의 용역
- ⑧ 혈액 및 혈액에서 파생된 치료목적의 상품
- ⑨ 인간 장기(태반 포함) 또는 진단 조직 또는 치료 목적 또는 의료 연구용역
- ⑩ 구급차량에 의한 부상당한 개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

일본은 소비세법 [별표 1]의 6에는 “다음에 제기한 요양 혹은 의료 또는 이것들과 비슷한 것으로서의 자산의 양도 등 (이러한 경우 특별한 병

16) <http://www.hmrc.gov.uk/index.htm>.

17) 701/31 Health and care institutions.

실의 제공 그 외의 재무대신이 정하는 것은, 재무대신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이라고 ‘의료보건용역(재화)’ 등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① 건강보험법(대정 11년 법률 제710호), 국민건강보험법(소화 33년 법률 제192호), 선원보험법(소화 14년 법률 제73호),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소화 33년 법률 제128호)(방위청의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소화 27년 법률 제266호) 제22조 제1항(요양등)에 대해 그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소화 37년 법률 제152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소화 28년 법률 제245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요양의 급부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가족요양비 또는 특별요양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요양 및 방문간호요양비 또는 가족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지정방문간호

② 노인보건법(소화 57년 법률 제810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료 및 입원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또는 의료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요양 및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지정 노인방문간호

③ 신체장애자복지법(소화 24년 법률 제283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갱생의료의 급부 및 갱생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지급과 관련되는 의료,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소화 25년 법률 제123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료, 생활보호법(소화 25년 법률 제14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료부조¹⁸⁾를 위한 의료의 급부 및 의료부조를 위한 금전급부와 관련되는 의료 및 원자폭탄피폭자에대한원호에관한법률(1994년 법률 제117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의료의 급부 및 의료비 또는 일반 질병 의료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의료

④ 공해건강피해의보상등에관한법률(소화 48년 법률 제111호)의 규정

18) 국민의 최저 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자·노령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불우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에 근거하는 요양의 급부 및 요양비의 지급과 관련되는 요양

⑤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소화 22년 법률 제510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요양의 급부 및 요양의 비용의 지급과 관련되는 요양 및 동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행해지는 의료의 조치 및 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지급과 관련되는 의료

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소화 30년 법률 제97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받아야 할 피해자에 대한 해당 지불과 관련되는 요양

⑦ 위 ‘①’ 부터 ‘⑥’ 까지 제시한 요양 또는 의료에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자격이 있는 의사 등이 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등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5]는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것이다.

[표 15] 의료용역과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국가·기구	의료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여부
OECD	medical care를 표준면세로 규정	규정없음
EU	치료·예방목적의 medical care에 한하여 면세됨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됨.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영 국	2007년에 위와 동일하게 개정	치료·예방·보전·회복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은 과세됨. 미용성형도 이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독 일	medical work에 대하여 면세됨	
프랑스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됨	
네덜란드	medical care에 대하여 면세됨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면세됨
오스트리아	의사의 공급(supplies made by doctors)에 대하여 면세됨	

자료출처 :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의 타당성 검토”, 2010. 6, 253면.

3. 교육용역

EU 지령에서는 EU 국가들은 청소년 교육, 초·중·고·대학교 교육 및 기타 훈련서비스와 비영리기관의 스포츠교육 및 체육교육서비스 등 비영리 공공교육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세적용 규정은 없다.

영국의 경우 ‘교육용역(Educational)’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의 별표 9(Schedules 9 : Exemptions)¹⁹⁾의 6 그룹에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고시(notices)에 의하여 열거되고 있다.²⁰⁾ 영국의 경우 정규교육과 직업교육 및 자격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지만 그 이외의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 ① 교육
- ② 적격의 단체에서 공급된 연구
- ③ 직업훈련
- ④ 개인 교습 행위 또는 학교나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과정에 의한 개인 교습의 제공
- ⑤ 적격의 단체에 의한 시험 서비스
- ⑥ 고용훈련
- ⑦ 청소년 클럽 또는 청소년 클럽의 용역

[표 16]은 주요국들이 영리목적의 교육용역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19) <http://www.hmrc.gov.uk/index.htm>.

20) 701/30 Educat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표 16] 주요국의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가	영리교육	비영리교육
영국	과세	비과세
독일	과세	비과세
프랑스	과세	비과세
벨기에	과세	비과세
네덜란드	과세	비과세
룩셈부르크	과세	비과세
오스트리아	과세	비과세
덴마크	과세	비과세
스웨덴	과세	비과세
이탈리아	과세	비과세
아일랜드	과세	비과세
노르웨이	과세	비과세
EU Directive	과세	비과세
일본	과세	비과세
대만	과세	비과세

자료출처 : 김유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50면.

일본은 소비세법 제6조에 의한 [별표 1]의 11에 다음과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을 정규교육에 한정하고 있다.

다음에 계기한 교육에 관한 역무의 제공(수업료, 입학금, 시설 설비비 그 외의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요금을 대가로 해서 행해지는 부분에 한정한다).

- ① 학교교육법(소화 22년 법률 제26호) 제1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사람이 해당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으로서 실시하는 역무의 제공
- ② 학교교육법 제82조의 2(전수학교)에 규정하는 전수학교를 설치하는 사람이 해당 전수학교의 동법 제82조의3 제1항(과정)에 규정하는 고등과정, 전문과정 또는 일반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으로서 실시하는 역

무의 제공

- ③ 학교교육법 제83조 제1항(각종 학교)에 규정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하는 사람이 해당 각종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수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그 외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실시하는 역무의 제공
- ④ 위 '①'로부터 '③' 까지 열거한 교육에 관한 역무의 제공에 비슷한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

제5장 주요 차용개념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분쟁 사례 분석

제1절 조세 분쟁의 의의

조세는 본질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과세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제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이념과 납세자의 권리는 한갓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조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자기방어적인 법적절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는 사전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전치주의에 의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처분청과 납세자 사이의 조세 분쟁의 사유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다. 이 때 조세 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법개념을 차용한 법조항의 해석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지 등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조세법의 차용개념이 단일 사법에서 사용되지 않고 복수의 사법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법 자체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개념이라면 조세법의 해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법규

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가 가치세법의 면세와 같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²¹⁾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세법 해석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이 세법해석의 기준은 세법이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인 성격을 띠므로 그러한 세법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세법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세법은 조세부담이 국민들의 담세력에 따라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1) ①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③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1919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세법의 해석은 먼저 해당 세법의 목적을 고려하고 해당 조항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세법의 해석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요 차용개념인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과 직접 관련된 조세 분쟁의 문제점을 행정 심판례와 법원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대부분의 조세 분쟁은 여러 가지 법 조항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분쟁은 다수가 단일 면세항목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주요 차용개념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심·판례분석

1. 금융용역

가. 심판례 분석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분쟁은 ‘법령에 규정된 금융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업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 ‘①’의 심판례는 법령에 규정된 금융사업자가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이다.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가 ‘금융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면세대상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①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의 업무수행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실제 투자자들에게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금융용역의 특성이 덜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투자일임업이 금융·보험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일임업인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²²⁾

다음 ‘②’의 심판례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해석·판단하는 결정이다. 이 분쟁은 차용개념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은행법자가 부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면세 여부는 은행업자가 제공한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권판매대행 업무를 은행법 관련규정에서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은행법과 세법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②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행 업무를 은행법 관련규정에서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동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은행법과 세법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상이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22) 국심 2003서3682, 2004. 3. 30.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위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은행업을 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같은 뜻)할 것이고, 은행업을 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복권판매대행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복권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²³⁾

다음 ‘③’과 ‘④’의 심판례는 인가받은 금융사업자가 아니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결정이다. 두 심판례는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하고 있다. ‘③’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가(認可) 등 요건을 구비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 성격이 금융·보험용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고, ‘④’는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까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정이다. 이처럼 심판례의 결정에서도 혼란을 겪는 이유는 차용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3) 국심 2000서2563, 2001. 1. 3.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체계를 보면, 제1항은 그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을 당해 법령이 정한 인가 등 요건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로 한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제2항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을 중시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등 요건을 구비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 성격이 금융·보험용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규정된 부수용역의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은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인가 등 요건을 구비한 자가 제공한 용역만이 면세용역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러한 용역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면세될 것이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²⁴⁾

④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각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란 주업인 금융·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된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

24) 국심2003서3194, 2004. 10. 29.

25) 국심2005서2898, 2006. 6. 30.

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⁵⁾

정부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조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를 라로 개정하였는데 위 ‘①’의 ‘투자일임업’은 2004년 12월 신설하였으며, ‘②’는 2000년 12월에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차용개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한 이유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발 빠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나. 판례 분석

판례에서 ‘금융용역’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음 판례처럼 복권 발행 업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금융·보험용역만을 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서 “금융용역”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과세거래로 본 것은 복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활동이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

상인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또한 후자는 위탁받은 복권발행 업무의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²⁶⁾

이 판례는 ‘금융용역’에 대한 차용개념을 정의하는 판례라고 본다. 문제는 현재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범위가 이 판례가 정의한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보다 넓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이체용역, 채권추심용역, 보관수수료용역, 금융자문 및 전문인적용역, 자금운용용역,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등은 실질적인 면세대상의 금융용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의료보건용역

가. 심판례 분석

일반적으로 심판례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의료행위가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26) 서울행법 법원 2002. 9. 27. 선고 2002구합9629.

27) 국심 2003부1972, 2003. 10. 22 국심2005중1380, 2005. 8. 31; 조심 2008중 1649, 2008. 11. 6.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²⁸⁾

이러한 보건의료용역의 판단은 실질에 따른 것이다. 다음 두 심판례는 의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경우인데 ‘①’은 과세사업자로 ‘②’는 면세사업자로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①과 ②’는 둘다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다. 하지만 ‘①’은 ‘실질적인 보건의료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건의료용역인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의 적용이 안되고, ‘②’는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쟁점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비용을 산후조리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사실 등에 의하여 면세를 적용하였다.

① 청구인은 산부인과병원 부설 쟁점 산후조리원이 의료보건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보건업(86)이 아닌 기타 서비스업(96)(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로 분류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

28) 국심 2006서2861, 2006. 11. 7.

니더라도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누구나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7부2648, 2007. 9. 21.)는 산부인과병원의 의사들이 산모들에게 진찰 및 진료를 하였고 간호사 등이 입원실에서 일반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의료보건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이건 쟁점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병원 의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산후조리원과 구분되거나 ‘실질적인 보건의료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건의료용역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⁹⁾

② 살피건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서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쟁점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 의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쟁점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비용을 산후조리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조심 2008광1959, 2009. 4. 21. 외 다수 같은 뜻)고 봄이 타당하다.³⁰⁾

29) 조심 2008중255, 2008. 5. 26.

30) 조심 2009광2316, 2009. 12. 21.

나. 판례 분석

대법원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다음 ‘①’ 같이 단지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 동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의 제공요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용역과 그 추구 목적 및 수행 과정이 유사함에도 단지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³¹⁾

31) 대법원 2008두11594 선고, 2008. 10. 9.

다음 ‘②’ 또한 피부과전문의인 원고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아닌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②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전문의인 원고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 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정한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전체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라 함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인,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기사만을 의미하고 피부관리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³²⁾

EC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2000년에 D.v.W 사례에서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의사가 행한 친자확인검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³³⁾하였다. 2003년에 Margarete Unterperntinger v. Pensionsversicherungsanstalt der Arbeiter 사례³⁴⁾와 D’Ambrumenil and Dispute Resolution Services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사례³⁵⁾의 결정에서는 의사가 행한 검사·진단이 ‘장애인연금의 대상 결정을 위해 사

32)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7673.

33) D. v. W., intervenierender österreichischer Bundesschatz, Case C-384/98, 2000, ECR I-6795.

34) Margarete Unterperntinger v. Pensionsversicherungsanstalt der Arbeiter, Case C-212/01, 2003.

35) Peter d’Ambrumenil and Dispute Resolution Services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Case C-307/01, 2003.

용되는 경우’, ‘의료분쟁에 사용되는 경우’ 등 치료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면세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EU 제6차 지침(Sixth Directive)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medical care’를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전부로 보지 않고 치료·예방·건강보전·회복으로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목적으로 의사가 제공하는 검사·진단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EC재판소의 결정이 EU 국가에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모두 과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용성형수술이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하여 치료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목적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미용수술을 하는 영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손님에게 올해부터 새로 생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면 미용성형을 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행복감을 향상시켜 심리상태를 개선하는 ‘심리적인 치료효과(psychological gain)’가 있다고 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면세대상 의료용역을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으며, EU 국가 중 일정 부분의 국가는 아직도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인간의 건강(human health)에 외모와 사회적, 정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미용성형을 일반 의료용역과 동일하게 면세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EU 국가 이외의 많은 국가들이 미용성형을 면세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하여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정규언, 앞의 논문, 2010, 240~241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법 개정으로 미용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용역

가. 심판례 분석

심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³⁶⁾라고 결정하였다. 교육용역이 면제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조건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등이라는 것이다. 다만, ‘허가 또는 인가’를 해석함에 있어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해석함에 있어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면세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³⁷⁾

36) 조심 2008서541, 2010. 5. 6.; 국심 2006구1588, 2006. 7. 20.

37) 국심 87서1858, 1988. 2. 3.

나. 판례분석

대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³⁸⁾

3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 1988. 4. 12. 선고 동 87누157.

제6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의 입법제안

제1절 의 의

조세법의 차용개념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조세를 사적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질서 가운데 끼워 넣기 위한 것이다. 조세를 일반적 법질서 가운데 끼워 넣는 것은 일반적 법질서와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차용개념이 조세법에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법의 고유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조세법의 특성이 국민의 재산권을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에는 사적계약자유원칙이 무시되고 공적인 조세법률관계만이 존재한다. 이 조세법률관계의 고삐를 쥌 수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공평과세에는 실질과세를 실천원칙으로 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차용개념은 추상적인 사적개념에서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공적개념으로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차용개념의 고유성이 화학적 변화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물리적 변화처럼 그 본질과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규정에도 차용개념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면세의 차용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차용개념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조세법의 입법태도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조세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적인 법 개정을 한다

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과 관련된 ‘금융·보건의료·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의 개정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비교적 개정절차가 간편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문의 항(項)과 호(號)를 추가해 가는 고질적 입법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제 규정’을 남발하고, 법령에 조(條), 항(項) 호(號)를 추가해 가는 소극적 태도로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입법자와 과세관청, 그리고 조세법학자들은 앞으로 조세법상의 차용개념들을 조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개념을 자주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김민호, 2002, 592~594면).

다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용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중심의 면세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와 조세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입법제안

1. ‘금융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현재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예금과 대여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이체용역, 신용장용역, 선물 및 옵션거래 용역, 채권추심용역, 보관수수료용역, 금융자문 및 전문인적용역, 자금운용용역,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용역·명의개서대행용역,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용역,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등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해지고, 금융과 보험 업종의 상호간의 영역이 서로 파괴되고, REITs·Mortgage·금융지주회사 등 새로운 금융관련 상품과 경제적 개념들이 생성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금융용역의 형태는 빅뱅(big bang)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고 변화무상한 ‘금융용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금융용역의 범위는 조세법이 아닌 은행법과 같은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범위가 은행법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은행법 등 무려 22개의 사법에 의해서이다. 물론 조세의 중립성을 위하여 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이 있지만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창남은 금융용역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용역 전체를 면세로 하고 그 중의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면세 범위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점영업에 대해서는 모두 면세하고 부수업무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업무의 개방화 및 국

제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별 업무영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사업자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용역과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면세체계보다는 금융용역의 구체적인 성질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 자체가 외형적으로는 금융용역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결정되고 있고,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예규 또는 기본통칙을 통해서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된 이자와 수수료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용역 이외에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대여금고의 운영, 환전용역, 자문수수료, 컨설팅 등에 대한 용역은 이자와 달리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금융과 보험 업종의 상호간의 영역이 서로 파괴되고 있는 현재의 경영환경에 있어서는 조세의 중립성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소득 이외의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수용역과 관련하여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시행령에서는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용역 및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및 주된 사

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가가치세법 또는 시행령에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통칙에서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을 부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시에는 금융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의 타당성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서 재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³⁹⁾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 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예금과 대여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의료보건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국가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감기약’은 보험급여 혜택과 함께 부가가치세도 면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감기약’은 보험급여 혜택도 부가가치세도 면세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감기 걸린 소비자에게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조세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치료의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조제하지 않는 질병치료제

39) 안창남, “금융용역과 부가가치세,” 「조세법연구」 제8-1호, 2002, 191~192면.

도 면세하는 것이 조세중립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2010년 12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미용목적성형수술’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해당되며,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반대쪽이 약간 많다고 보인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전환에 대하여 김승래 외(2007), 김승래(2008) 등의 연구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박민(2002), 안창남(2002) 등의 연구에서는 반대하거나 또는 과세전환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자인 정규언(2010)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치료 목적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EC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목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용성형의 상당 부분은 치료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민(2002)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재건목적의 성형수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성형수술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미용성형은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적인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운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와는 무관하게 공급자에 의해서만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면 ‘미용목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급받는 자의 목적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면 과세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판단이 들어가게 되며, 이 문제는 결국 과세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과세여부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용개념인 ‘의료보건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 조세법률주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가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조세원칙을 배제하고 조세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따라 면세와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경시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범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한 면세기준 없이 시행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하게 하는 것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물론 일본의 경우 소비세법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는 대부분 관련법의 ‘요양급여’ 대상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고 거의 모든 의료보건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만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규정은 ‘거래대상’의 면세가 아닌 ‘사업자중심’ 중심의 면세제도⁴⁰⁾ (예를 들면 의료업은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로서 이는 경제발전에 따라서 거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거래가 탄생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부

40) 원 논문에는 “우리나라의 면세규정은 ‘사업자중심’의 면세가 아닌 ‘거래대상’ 중심의 면세제도”로 기술되어 있음.

유충만이 이용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지만(예를 들면,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전환문제 등) 현실은 모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인 바, 조세제도가 실물경제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안창남, 2004, 34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의료보건의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가의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공급하는 의료보건의용역, 혈액과 위생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하고자 한다.

3. ‘교육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법치국가에서 법이란 구성원인 국민의 공감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입법하게 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았다는 합법성이나 당위성만 가지고 시행령에서 ‘면세하면 면세이고 과세하면 과세’ 하는 방식은 법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빚자루식 입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빚자루의 손잡이만 규정하고 나머지 빚자루의 형태나 재질은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알아서 만들라는 식을 말한다.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법의 입법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위임입법 방식이다.

2010년 12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무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

도록 하였다.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영리교육은 과세하고 비영리교육은 면세한다는 과세기준의 국제화와 과세품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 7월부터 과세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부는 2010년 12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그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영리교육은 과세하고 비영리교육은 면세한다는 과세기준의 국제화와 과세품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

41)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자동차의 운전

③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

④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교육 또는 제104조⁴²⁾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4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⁴³⁾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

42) 도로교통법 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목적이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수강생 개인과 사회에서 얻고자 한 것은 자동차운전 교육을 통하여 보다 문화적이며 준법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동차운전교육이라면 수강생에게 다양한 지식·기술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전학원 이외의 다른 영리목적의 학원용역과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운전은 필수적인 것이며, 자동차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다.

모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총 사고건수는 총 2,331,063명이고 총 사망자수는 69,907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매일 같이 교통사고가 640여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여명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 국회의원은 “안전의식 계도 운동으로 교통사고·사망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OECD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 1등”이라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환경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만을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시행령 개정이 과세공평과 조세중립 측면에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본다. 정부는 운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운전교육도 다른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며 다른 교육용역과 차별되게 과세하는 것은 타

44) heraldrm.com(2010-10-11 7:37).

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이 단순히 ‘운전면허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만이 아닌 운전자의 자질향상으로 우리 모두가 문화적이며 준법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실질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영리목적의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시행령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는 그때마다 단편적인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목적에 합당한 교육의 차용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교육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제공하는 정규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및 기타교육(영리목적의 기타교육은 제외)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7장 결 론

조세법은 민법, 상법 등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상을 조세법에서 사법개념의 차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드시 조세법과 사법 사이에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사법 이외의 다른 법분야에서 고유성을 가진 개념을 조세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세법 이외의 법 분야에서 이미 고유성을 가진 개념을 조세실체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용개념이라 한다. 따라서 차용개념이란 조세법상 법해석·적용과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 중에 그 이론적 연원을 조세법이 아닌 다른 법(주로 사법)에 두고 있는 용어를 말한다. 차용개념 중에는 조세실체법 스스로가 그 개념의 정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차용개념을 다른 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세징수의 확보 내지 조세부담공평의 관점에서 그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개념과 용어는 경제생활의 개념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경우 고유개념보다는 차용개념을 많이 규정하고 있다. 면세제도의 차용개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대상의 재화와 용역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은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활

동과 직결된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고유 개념보다는 대부분이 차용개념으로 구성되어 졌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차용개념들 중 근간에 면세의 폐지 또는 축소가 많이 논의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적으로 면세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융용역’과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을 주요 차용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요 차용개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해당 용역의 면세범위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임명령인 시행령이 해당 용역의 면세범위를 포괄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조세에는 사적계약자유원칙이 무시되고 공적인 조세법률관계만이 존재한다. 이 조세법률관계의 고삐를 쥌 수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공평과세에는 실질과세를 실천원칙으로 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차용개념은 추상적인 사적개념에서 보다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공적개념으로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하지 않는 차용개념은 조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조세 분쟁은 여러 가지 법 조항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분쟁은 다수가 단일 면세항목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용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조세법의 입법태도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조세행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에 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적인 법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과 관련된 주요 차용개념인 ‘금융용역’·‘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률의 개정 수요에 미

리 대비하기 위하여 비교적 개정절차가 간편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문의 항(項)과 호(號)를 추가해 가는 고질적 입법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행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 조항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범위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완전히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하고자 하는 ‘금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개념과 기본적인 면세범위를 규정하여 이들 차용개념의 범위를 확실히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본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면세범위를 열거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예금과 대여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의료보건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 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가의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 혈액과 위생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교육용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닌 본 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제공하는 정규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및 기타교육(영리목적의 기타교육은 제외)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한다”로 제안한다.

끝으로 입법자와 과세관청, 그리고 조세법 관련 학자들은 앞으로 조세법상의 차용개념들을 조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세실체법에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규정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인애, “租稅法の 解釋과 實質課稅의 原則(下),” 「판례월보」 제214호, 판례월보사, 1988.
- _____, 「조세법Ⅱ」, 조세통람사, 1989.
- 김민호,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의미 : 판례평석을 통한 입법제안”. 통권 제532호, 2002.
- _____, “조세법에 있어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조세회 피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公法研究」 제31집 제1호, 韓國公法學會, 2002.
- 김승래,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조세연구」 제8-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13권 제7호 통권 제145호, 2008.
- 김완순, 「財政學概論」, 茶山出版社, 1987.
-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 _____,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조정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VAT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김유찬 · 장근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이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

- 호, 2006.
- _____,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경제적 타당성 및 기준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22집 제1호 통권 제23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 김중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사업관련성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세경사, 2000.
- 남풍우, “정부대행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납세의무자의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關稅學會誌 제9권 제2호, 韓國關稅學會, 2008.
- 류수현,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와 무역」 제34권 제2호 통권 제376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2.
- 박 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를 중심으로”, 「租稅法研究」 제8-2호, 韓國稅法研究會, 2002.
- 신순철,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연구 : 금융기관의 비이자수익을 중심으로”, 「월드텍스연구논집」 제1권 제1호, 월드텍스연구회, 2005.
- 안창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2.
- _____, “金融用役과 附加價値稅”, 「租稅法研究」 제8-1호, 韓國稅法研究會, 2002.
- _____, “프랑스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규정”, 「조세학술논집」 제20집,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 오기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韓國稅務學會, 2006.
- _____, “부가가치세의 면세 변천과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제4회 한국·중국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韓國稅務學會, 2005.
- 원정숙, “거래행위의 私法的 有效性和 세법상 인정 여부”, 「租稅法研究」

- 제10-2호, 2004.
- 윤태화·서희열·김유찬, “소비세 분야의 세제 개편방안”,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6.
- 이강국, “실질과세의 원칙”, 「사법논집」 제13집, 법원행정처, 1982.
-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公法研究」 제31집 제2호, 韓國公法學會, 2002.
-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8-1집, 2008.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 법학」, 2002.
- 장석조,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 실질의 의미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과 재해석”, 「사법논집」 제33집, 2001.
-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0.
- 정재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제75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최명근, 「조세법총론」, 영화조세통람사, 1998.
- _____, 「부가가치세법론(개정13판)」, 영화조세통람사, 2002.
- 홍광식, “세법과 사법”, 「사법논집」 제25집, 법원행정처, 1994.
-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8.

2. 국외문헌

OECD, Indirect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998.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2001.

_____, Value-Added Taxes in Central and Easturn European Countries, OECD Centre for Co-operation with Non Members, 1998.

-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 ⑥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 ⑦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 研究叢書案内

⑧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的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⑨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⑩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鎮 淳 1994. 10

李 哲 松

⑪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⑫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⑬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⑭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⑮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閏 煥

-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12
-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 3
-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 12
- [21]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 3
- [22]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 3
- [23] 申告納付稅制의 評價와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徐 熙 烈 1998. 3
- [24]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改善方向
高 承 禧 1999. 3

■ 研究叢書案内

[25] 企業合併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9. 3

[26] 聯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과 政策課題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0. 3

[27]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0. 3

[28] 프랑스 租稅節次法 研究

安 昌 湍

2001. 1

[29] 稅效果會計論 研究

高 承 禧

2001. 3

[30] 오스트리아 稅務士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3

李 鍾 永

[31] 리스會計와 리스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1. 3

[32] 派生商品關聯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玉 武 錫

2001. 4

[33] 推計課稅方法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4

34 附加價值稅 改編方案 研究

安 昌 湍 2002. 3

35 營業權(企業價值)의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2. 3

36 負擔金 관련 行政審判代理業務의 擔當主體에 관한 研究

金 相 憲 2002. 3

37 企業年金의 會計와 稅務

高 承 禧 2002. 3

38 不動産 相关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3. 3

39 綠色申告 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研究

稅務士制度改善推進委員會 2003. 3

綠色申告制度研究委員會

40 電子商去來時代に 對應한 課稅體系整備와 稅務서비스 改善

李 在 奎 2003. 3

皇甫 烈

41 稅務서비스 市場開放에 대한 稅務代理業界의 對應

高 俊 誠 2003. 3

42 稅法상 企業會計 準用 規定의 問題点과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法人稅法 第43條의 立法的 誤謬와 改編方案을 中心으로)

李 愚 澤 2003. 11

■ 研究叢書案内

[43] 納稅組合의 效率的 管理改善 方案

金 雄 熙 2005. 3

李 基 煜

[44] 租稅法令 解釋情報의 體系的 生産 및 傳達 方案

李 基 煜 2005. 7

金 雄 熙

[45] 新經濟時代 우리나라 株式評價 및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李 愚 澤 2008. 7

金 完 鎰

[46] EITC(勤勞獎勵稅制)導入의 先決課題에 관한 研究

俞 景 文 2008. 7

[47] 租稅法の 憲法合致的 立法論에 관한 研究

李 銓 午 2008. 8

[48] 賣買事例價額의 時價適用 및 이에 따른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朴 孔 卓 2008. 8

[49] 우리나라 記帳擴大方案 研究

朴 性 培 2008. 8

[50] 租稅行政審判前置制度에 관한 研究

蔡 羽 爽 2008. 8

[51]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安 昌 湍 2009. 1

- 52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徐 熙 烈 2009. 1

- 5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金 淀 植 2009. 1

朴 薰

- 54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金 完 石 2009. 3

- 55 현대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세무대리·세무대리인·
납세협력비 등 언어의 폐해와 개선방안

李 愚 澤 2009. 10

- 56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심 태 섭 2010. 3

김 상 철

서 희 열

- 57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 윤 성 2010. 4

이 은 자

이 명 근

- 58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 지 선 2010. 4

장 근 호

■ 研究叢書案内

59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정 식 2010. 4

서 희 열

60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 석 남 2011. 3

심 충 진

61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 지 선 2011. 3

권 오 현

6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오 기 수 2011. 3

손 장 엽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 研究調查資料案内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9〕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璿 1996. 3

李 承 文

〔11〕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浚 1997. 2

〔12〕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13〕 獨逸法人稅法

金 光 洙 1999. 2

〔14〕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金 裕 燦 外 2003. 3

研 究 報 告 書
第 62輯 (2011.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2011年 3月 15日 印刷

2011年 3月 18日 發行

著 者 오기수 · 손장엽

發行人 韓國租稅研究所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1988年 11月 11日(바 1184)

ISBN 979-11-5520-004-9

〈非賣品〉